

## 대여금고 약관 전·후 대비표

◎기존가입고객적용여부 : 적용

◎시행예정일 : 2018. 12. 19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1조 적용범위 ~ 제15조 대여·양도금지 (생략)</p> <p>제16조 면책</p> <p>① 은행이 임차인의 신고인감 또는 서명을 육안으로 주의 깊게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임차인용 열쇠를 가진 자에게 대여금고 열람을 허락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7조 준 용 (생략)</p>	<p>제1조 적용범위 ~ 제15조 대여·양도금지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 면책</p> <p>① 은행은 임차인의 신고인감 또는 서명을 육안으로 주의 깊게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임차인용 열쇠를 가진 자에게 대여금고를 열어준 때에는 <u>대여금고 열쇠의 위·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, 은행은 임차인의 열쇠가 위·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 준 용 (현행과 같음)</p>	<p>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시정 요청</p>